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085
----------	------

2017. 9. 1  
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1940번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의안번호 206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2016.7.7.)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,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며, 자치구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고자 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, 입간판의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삭제함(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안 제9조의2제1항제3호).

- 나. 디지털광고물을 사용·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‘공연간판의 표시방법’을 정비함(안 제7조제5호).
- 다.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“지주형 가로 영상문화시설”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항제2호).
- 라.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중에서 허가·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(제23조제2항2호나목)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“제4조제3항제2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4호·  
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“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  
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”를 “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 
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(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  
하,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)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안 제9조2제1항제3호 단서, “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 
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 
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”를 삭제한다.

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 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쉼터,  
가로영상문화시설(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

한한다)

안 제2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광고물등”을 “광고물등(허가신고 대상  
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행	대안
<p>제2조(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</p> <p>1. 자사광고(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·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·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.</p> <p>가.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제4조(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</p>	<p>제2조(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제4조제1항제4호·제3항제2호 ----- ---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</p>

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을 포함한다)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·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,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가. (생략)

나.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(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,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)-----

4. ~ 9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7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·전광류와 화면변환·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

4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〈 삭제 〉

제9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 ①-----  
-----  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-----  
-----  
-----

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4.~ 5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셸터

② ~ ③ (생략)

제23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
① (생략)

-----  
----- . <후단 삭제>

4.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지상변압기함, 공공자전거 보관대, 교통정보안내판, 횡단보도 셸터, 가로영상문화시설(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
① (현행과 같음)



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(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가.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

나.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

다. ~ 라. (생략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

가. -----

나. -----  
-----

----- 광고물등(허가·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)

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